

2022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
[Unsafe act, 근접오류와 FMEA]

비대면 연수교육
 교육일시: 2022.9.1.(목) 09:00 ~ 18:00

구분 (각 50분)	주제 (강의포함 요청사항)	강의자
1차시	Unsafe act & condition, Near miss 관리의 중요성	김소연 서울성모병원 PI팀장
2차시	고장유형 및 영향분석(FMEA) 방법 이해	최애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QPS팀장
3차시	FMEA사례 - 투약 프로세스 개선	윤수덕 보바스기념병원 간호부장
4차시	FMEA사례 - MRI 안전한 촬영 프로세스 개선	이수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QI팀장
5차시	FMEA 사례 - 조영제 과민반응 예방 FMEA활동	김현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PI팀장
6차시	FMEA 사례 - 외국사례	정명숙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이사

- * 등록 완료자에 한하여 강의 자료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,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.
- * 필수) 강의 수강률 100%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되므로, 강의 수강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(9월 1일 (목) 09:00 ~ 9월 2일 (금) 17:00)내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.

등 록 안 내

< 참가인원 > 제한없음

< 참 가 비 > 등록 정/준회원 : 6만원

※ 회원 구분

- 등록회원 : 회원 가입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
- 정회원 : 간호사
- 준회원 : 간호사 이외 직종

< 등록안내 >

- 1) 등록기간 : 8월 1일 (월) 10:00 ~ 8월 28일 (일) 24:00
- 2) 등록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-> 학술대회/연수교육 -> 비대면 연수교육 신청 -> 가상계좌로 교육비 입금
- 3) 등록완료는 참가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로 등록기간 내 미입금 시 등록 취소 (가상계좌 입금기한과 무관)

< 영 수 증 >

- 1) 거래명세서 및 현금영수증은 결제사(NHN KCP)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
- 2) 결제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용도 선택 후 등록 가능 (※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 - ★ 소비자(개인)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(기관) 지출증빙용 중 선택하여 등록
- 3) 거래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재발송이 필요한 경우, 이메일(kosqin@qi.or.kr)로 재발송 신청
 - ★ 거래 내역 / 성함 / 휴대전화번호 / 소속기관 / 입금일자 기재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★ 영수증 관련 업무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, 매주 목/금요일 순차적으로 처리

< 환 불 >

- 1) 8월 29일 (월)부터 환불 불가
- 2) 환불방법 : 홈페이지 -> 학회소식 -> 공지사항 - [공지] 교육등록취소 및 환불신청안내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(kosqin@qi.or.kr) 발송 및 유선연락(02-701-4799)

< 수강방법 >

- 1) 수강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-> 동영상 강의실 -> 내 강의보기 -> 해당 교육의 [시청하기] 클릭
- 2)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(9월 1일 (목) 09:00 ~ 9월 2일 (금) 17:00) 내에는 반복 수강 가능

< 강의자료 >

- 1) 8월 30일 (화) 13시 이후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강의 자료(PDF 파일) 발송 예정
- 2)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내에는 **동영상 강의실 -> 해당 교육 [시청하기] 클릭 -> 자료실에서** 다운로드 가능

< 이 수 증 >

- 1) 해당 교육은 실시간 동영상 강의로 **수강률 100% 충족 시 이수증 발급**
- 2) 발급된 이수증은 **9월 5일 (월) 오후 1시부터** 조회 및 출력 가능
- 3) 출력방법 : **동영상 강의실 - 이수증 출력** 또는 **마이페이지 - 학술대회/교육이력** 화면에서 조회 및 출력
- 4)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강의영상을 시청한 경우, 이수증 발급 불가
- 5) 동영상 강의실 오픈 기간 내에는 이수증 조회 및 출력 불가

< 알 림 >

- 1) 해당 교육은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7.1 조사항목 2.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요구되는 교육으로 인정 가능
- : 급성기 병원 3주기 인증조사 표준지침서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련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, 교육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<문 의>

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사무국 02-701-4799, kosqin@qi.or.kr